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 익 수

2018년 7월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지도교수 남진열

김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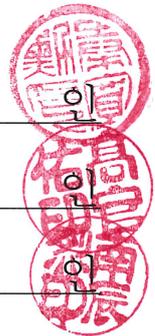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김익수의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확인함

심사위원장

김기훈



위 원

고원우

위 원

남진열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년 6월



Factors Affecting Role Satisfac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Members in Jeju Eup-Myeon-Dong

Kim, Ik-Soo

(Supervised by professor Nan, Chin-Yea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18.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제주지역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김익수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활동 요인과 네트워크 요인, 운영체제 요인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46명중 243명을 조사한 설문지에 대하여 SPSS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는 남녀 위원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위원들이 소속된 행정시와 공무원의 관심도가 높을 때 그리고 위원들의 참여도와 협의체 운영체제 자원이 높을 때 역할 만족도가 높았다. 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수록 성취도가 높아 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위원 간 수평적 신뢰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았고, 운영체제 요인이 높을 때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읍면동 지역 내 사회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자원이 위원회에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차원의 복지전달체계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다

양한 복지욕구 및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내실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내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망라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주지역 행정시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6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6
2. 지역사회복지 가버넌스	18
3.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20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
5. 선행연구	33
III. 연구 방법	37
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37
2. 조사방법	38
3. 자료 분석방법	40
IV. 연구결과	42
1. 일반적 특성	42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46
3. 일반적 특성의 집단 간 차이 분	48
4. 상관관계 분석	56
5.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58
V. 결론	61
1. 연구결과	61
2. 제언	66

참고문헌 69

<부록 1> 설문지 73

표 목 차

〈표 2-1〉 최근 10년간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정책과 주요 방향성	15
〈표 2-2〉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 요약	16
〈표 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	27
〈표 2-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	29
〈표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31
〈표 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체별 역할	32
〈표 3-1〉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39
〈표 3-2〉 설문지 배포현황	39
〈표 3-3〉 구성변수 및 신뢰도 측정	40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
〈표 4-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태	44
〈표 4-3〉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개선할 점	46
〈표 4-4〉 참여활동 요인	46
〈표 4-5〉 네트워크 요인	47
〈표 4-6〉 운영체계 요인	47
〈표 4-7〉 역할 만족도 수준	48
〈표 4-8〉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49
〈표 4-9〉 행정시별 집단 간 차이 분석	50
〈표 4-10〉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 차이 분석	51
〈표 4-11〉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52
〈표 4-12〉 참여 동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53
〈표 4-13〉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54
〈표 4-14〉 활동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55
〈표 4-15〉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57
〈표 4-16〉 협의체 위원들의 성취만족에 따른 역할 만족도	59
〈표 4-17〉 협의체 위원들의 기능만족에 따른 역할 만족도	60

그림 목차

<그림 2-1>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	33
<그림 3-1> 연구의 모형	3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실은 사회보장의 기본 틀은 완비되었으나 사회보험의 보장성은 낮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염전 노예사건, 생리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등 수혜자에 대한 복지체감도의 질은 높지 않다.

또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가와 더불어 저 출산 고령화 등 인구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역단위 복지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의 감소와 양극화의 심화, 일자리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고조 등에 따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이태준, 2016), 세월호 침몰사건,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다변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조치 등 사회적 위기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낮은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지난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2016년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한 결과 방문회수 4.3배, 복지사각지대 발굴 6.2배, 서비스 연계 3.4배, 방문대상자 수 2.5배, 통합사례관리 의뢰 2.5배가 증가했다(이운형, 2018).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시군구 중심이던 복지전달체계를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찾아가는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역의 읍면동 단위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최 일선이자 중심적 주체로 개편하여 2016년 933개에서 2017년 2,100개로 확대하였고, 2018년에는 3,502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는 읍면동이라는 공간을 단순한 서비스 전달통로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라

는 차원에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주체로 전면
에 내세우는 특징이 있다. 주요내용은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를 전
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복합
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지속적인 상
담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통합서비스)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찾지 않는 이들을 복지공무원과 통(이)장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직접 찾아가 상담과 지원(찾아가는 서비스)을 하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
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관리를 통해 민간자원을 발굴·확보하고 활용(민
간조직, 자원 활용)하고 있다(이운형, 2018).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전
담팀 구성·운영,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 및
강화,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이행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채현탁, 2016).

기존의 주민복지팀을 주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으로 나누어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주민복지팀은 복지행정관련 업무를 맡고, 맞춤형복지팀은 맞춤형복지팀장
과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되어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다. 이에 맞춤형복지팀이 소득가구를 가정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이웃주민들
을 통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공공기관·민간사회복지기관·일반기업·
자원봉사센터 등의 여러 복지서비스 중 대상자에게 필요하고 지원 가능한 서비
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에는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는 여전히 한계점을 나
타내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의 어려
운 상황과 욕구는 이·통·반장, 지역유지 등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
기 때문이다(박기용, 2016).

이운형(2018)은 복지는 점차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복지욕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점차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국가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

역할 주체가 옮겨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느 전문분야나 행정기관에만 역할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주체와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며 주민들의 참여는 생활상의 욕구에 즉각 대응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등 주민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은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인 동시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가는 양면성을 가진다.

지금까지의 관 주도의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그리고 실천영역에서의 일방주의적 서비스 전달을 탈피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전달과 다자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민간영역의 개인, 집단, 조직과 공공영역의 개인, 집단, 조직이 통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교환체계이자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그리고 협치가 실현되는 도구로써 네트워크라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체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원과 공공의 자원이 결합하는 민관협력은 결국 주민통합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작동할 것이다. 즉, 민의 특성과 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자의 단점은 강점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유용식 외, 2016).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관련기능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장 일선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복지사업 발굴 및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단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존의 민관협의체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화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지, 과연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체계가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제주지역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제도화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읍면동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초기 구성원들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라기보다는 이·통·반장, 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성격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에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역할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근린성과 지역 공동체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으로 읍·면·동까지 운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중심 추진체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단위의 자발적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복지허브화의 기능 중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발굴·확보 및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운형, 2018).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지역 내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협의체 운영체계와 참여활동 및 네트워크 등 협의체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역할 만족도를 살펴보고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욕구 해소에 대한 협의체 위원들의 인식개선 및 협의체 활동의 참여도를 높여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문제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활

동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탐색하고 발전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하는 것으로 주된 연구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복지인식 정도와 참여활동이 복지서비스에 영향주고 있는지와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보호체계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지역 복지현안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문제는 “제주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활동 요인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요인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요인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1) 지역사회복지 개념

지역사회복지란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환경개선서비스, 지역사회주민의 조직화 활동,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생활문제의 전반적인 것을 도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다(김범수, 2010).

지역사회복지는 개인복지나 가정복지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이며,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라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 지역성(locality relevance)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지역사회복지는 개인, 가정, 집단 등 낮은 수준의 사회체계의 복지와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연속선상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역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상적인 지역사회(ideal community)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지역사회란 어떤 상태의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만 이를 위한 노력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의 주요 제도가 맡은 바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어느 특수 전문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 공중보건, 성인교육, 공공행정, 도시계획, 정신건강 등의 전문가들과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행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오늘날의 민간자선 활동, 지역사회개발운동, 지역사회복지운동 그리고 전문적인 지역사회조직사업을 망라하게 된다(류기형 외, 2015).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으로써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

역사회가 갖는 복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구성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전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 등을 포괄하는 일련의 개입 활동들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협의적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넘어 보다 광의적인 차원에서, 즉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련의 개입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구성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속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복지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체가 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는 조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방법을 사용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이계탁은 “지역복지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의 협동 체제를 구축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주민의 복리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 하는 것” 이라고 지역사회복지를 정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체성, 자발적 참여, 협동정신을 강조하고 있다(이계탁, 1996 재인용).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 실천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으며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 한다. 그러나 변화는 자동적으로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개입에 의한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 한다. 지역사회복지는 계획된 지역사회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다(이진희, 2006).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단위로 축소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활동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및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활동, 둘째,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 및 관련 기관들의 사회복지

지 서비스의 개선 및 통합과 관련된 활동, 셋째,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와 관련된 활동, 넷째, 지역사회의 문제나 이슈와 관련해서 주민집단을 형성하고 조직화하여 집단능력을 배양하고 고유한 지도력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 다섯째,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계층을 대변하여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여 사회정의를 구현 하는 실천 활동 등이다(류기형, 2000).

이영복(2010)은 지역사회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 단위에서 추진되는 기본적 사회복지를 말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주민의 욕구와 의사에 부응해야 하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수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관주도형이 아닌 주민의 필요에 의해 관리되는 주민욕구 지향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에 있어서 지역주민은 수혜자임과 동시에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수혜는 물론 지원도 하게 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재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 즉, 복지대상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발굴과 동원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공적 사회안전망 및 관련 예산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조직과 민간단체, 행정기관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는 사회 경제적 여건과 사회복지욕구의 변화에 의해 확대된다. 오늘날 신 빈곤층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등 복지 수요가 다양

화 되고 있으며, 급속한 저 출산·고령화 추세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방법도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물질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 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핵심기체이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조직적 배열로서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장이라 할 수 있다(남진열 외, 2017).

다른 의미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법과 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달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환기시키는데 필요한 사회 복지조직에서의 총체 활동인 사회복지행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사회복지의 기능이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차원의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양정하 외, 2010).

그간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을 보면, 일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공-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구조적 원칙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복지서비스 담당자의 부족과 업무 과중에 따른 전문성의 확보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인정, 2010).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먼저 복지사업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됨에 따라 광역지자체(지방정부) 내에서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에 의한 전달체계 개편 논의와 별도로 지역사회 중심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단위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구성 및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의 복지위원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 반영과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방안이다

(남진열 외, 2012).

지역기반의 복지공급체계는 인간의 문제를 단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치환하는 제도공학적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한다.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지역의 생산력을 회복하고, 이를 조직화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 생활세계를 탈환하는 것을 통해 생태적이고 전일적인 지역을 만듦으로써 가능해진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시스템과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은 인간의 문제와 욕구를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연대와 참여를 제도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역설적으로 문제와 욕구의 다양성과 다면성을 간과함으로써 지역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회복능력을 해체하는 경향이 있다.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다양성에 대한 획일성의 지배(domination)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제도의 대상으로만 확인되는 심각한 제도의존(institution dependence)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역기반 복지공급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합리성이 지배하는 제도 영역과 생태적 특성이 지배하는 지역 영역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들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재편해야 함을 주장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떠받치는 인프라로서 사회복지 정보체계와 자원공급체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한동우, 2013).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범주에 포함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에 의한 서비스 등이다. 사회보험은 주로 보험유형별로 독자적 기능의 기관을 통한 단순 전달체계를 가진다. 공공부조의 급여제공 업무 역시 정부조직 간의 연결(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과 같은 단순 전달체계를 띤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공부조 기능과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은 상당히 복잡한 조직과 프로그램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공과 민간 조직들이 혼재되어 자원 이전이나 공유, 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기획, 생산, 전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달체계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독립적 또는 혼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서비스) 또한 정부조직(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과 지역

사회의 민간조직이 혼합되어 제공하고 있다(남진열 외, 201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는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협조로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의 수직적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공적 전달체계는 현금급여 등을 중심으로 기초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 민간 전달체계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기현, 2013).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개편 특성은 읍면동이라는 지역성 통합서비스 및 연계·협력이라는 통합성, 주민참여라는 주체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채현탁, 2015).

첫째, 지역성은 지역주민의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의 복지전달체계는 도시형의 경우 동을 단위(혹은 생활권역)로, 농촌형의 경우에는 몇 개 읍면동을 묶은 생활권역을 지역단위로 상정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즉 지역의 물리적 거리인 인구 상황 및 자원의 양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를 동 혹은 생활권역으로 구분하고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둘째, 통합성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중심의 One-Stop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서비스 연계·협력 중심기구로의 기능 확대 등과 연관되며, 복지공급자 측면의 종합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비스이용자 측면에서는 전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기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주민생활은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고용·교육·문화·교통·안전·환경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주체성은 동 복지협의체를 포함한 읍면동 인적 안전망(주민네트워크)과 관련된 것이다. 지역주민은 서비스의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여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즉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과제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기 전에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며, 주민간의 신뢰와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도와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규정 과정에서 피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고, 전달체계 개편이 지향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이후 설계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목표설정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주 개편 내용, 조직설계, 인력배치 설계 과정은 섬세하게 고려되지 않고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행과정에서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실행과 관련된 주체와 능력도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과정은 체계적인 평가과정의 부재와 설계 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문제에 대한 모호한 진단과 모호한 처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확한 분석과 정밀한 정책설계, 실행을 담보할 조직과 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정책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선을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여러 번의 개편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한 것이다(김이배, 2014).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는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체계가 구성되어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공적 부조의 수행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역할분담론에 입각하여 업무와 재원이 지방정부로 이관된다면 실질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구현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능력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 주도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허철행, 2018).

지역사회복지실천 체계를 서비스 제공 중심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중심의 추진체계, 자원개발 중심의 추진체계로 나누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제공 중심의 추진체계로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기관을 네트워크 중심의 추진체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자원개발 중심의 추진체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원봉사센터를 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사업 및 모금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 안전.고용.교육이라는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복지사업과 연계된 기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주체를 분류했다(채현탁 외, 2017).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주효한 수단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제도의 충실성, 적절성이 기본이 된다. 특히 개별 제도로만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함양할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서 여타 복지제도의 보수적 운영은 필연적으로 전달체계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국민이 느끼는 복지는 복지제도만의 운영에 의해서 체감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동된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면, 이에 걸맞은 수준에서 전달체계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김이배, 2016).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적, 정책적 영역 중 지역사회복지 영역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장 역동적으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하며, 협력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의 고려가 요구되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협의·조정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정지웅 외, 2015).

한국의 복지전달체계의 특징은 첫째, 한국의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는 제도 도입의 초기는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급진적으로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경제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점진적 제도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점진적 제도변화의 과정은 주로 예산, 정부 조직권을 지니고 있는 중앙관리부서의 거부점에 의하여 재량이 적은 제도 영역에서 총화의 방식으로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대통령이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때는 이러한 거부점을 극복하고 제도적 대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공단이나 예산사업을 통한 센터를 통하여 난립현상이 발생하고 각 부처별로 예산당국 또는 조직심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의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며 하위 접점의 영역인 주민센터로 업무가 집중되어 깔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복지통합의 차원에서 한국의 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달체계의 형성에서는 보다 비용절약적인 방식으로 생각되는 준공공조직을 활용하고 예산 사업적 성격을 지니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로서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현중, 2016).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복지국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컨트롤센터 기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나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행정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 사회복지체제는 거버넌스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조직과 기구들의 참여를 근거로 협치를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허철행, 201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접촉하는 지역사회 체계속에서 공급자간 혹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조직간의 연결망이자 서비스 전달의 구조라 할 수 있다(심상용, 2017).

이러한 전달체계로서 읍면동이 지역복지 현장을 적합한가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복지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주민 자신이 일상생활권 안의 복지과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며, 읍면동은 공공복지의 거점이고, 공공 인력과 공간, 그동안 복지실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 단위로 일정 수준을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 사례관리, 자원개발, 복지계획, 공간조성, 주민조직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단위로 적합하므로 지역복지 실천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읍면동 차원의 민관협력은 공공주도-민간중속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읍면동의 행정 주도성으로 인하여 주민 주체성 내지는 지역 자주성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우려가 예상되며, 읍면동은 고난이도 사례관리, 자원 관리, 복지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단위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박태영, 2017).

강혜규(2017)가 제시하는 최근 10년간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정책과 주요 방향성을 다음과 같다.

<표 2-1> 최근 10년간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정책과 주요 방향성

연 도	개 편	주요 방향성
2006-2007	지자체 주민 생활 지원 기능 강화 개편	· 복지에서 사회정책 영역으로의 확장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복지 전담) 운영
2010	행복이음 구축 및 본청 통합 조사관리팀 운영	· 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효율화 추진 · 읍면동의 '갈때기 현상' 해소, 여력 확보
2011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복지 수요의 확대·다양화에 따른 욕구 중심의 서비스 대응 및 공공 자원의 제약 해소 · 공공 복지업무로서 통합사례관리 공식화
	지자체 복지 인력 7천 명 증원 결정	
2014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 맞춤형 서비스 대응을 위한 최일선 점점 강화 ·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거점으로 활용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추진)
	지자체 복지 인력 6천 명 증원 결정	

출처 : 강혜규(2017).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 정책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3)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금까지 전달체계 문제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민관협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 2월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이 논의되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첫째, 복지직 팀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군구의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김이배, 2016).

<표 2-2>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 요약

문제점	목표	수단	기대효과
복지 체감도 한계	복지체감도 제고	맞춤형 복지팀 구성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 깔대기 현상	업무 전문성 강화	전문직위제	사각지대 해소
민간과 연계 부족	민관협력 활성화	협의체 등 활용	주민주도 문제해결

출처 : 김이배(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된 목표는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필요성의 경우 첫째, 사회문제의 복잡·다양화, 둘째, 국민의 낮은 복지 체감도, 셋째, 복지사각지대 문제 상존, 넷째, 민관협력·자원 공유 중요성 증대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민관협력과 자원 개발·관리’ 라는 4가지 사업이다(손지현 외, 2017).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 내용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팀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 조직과 자원 활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과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통합서비스 지원은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가구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연계 등의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그리고 민간 조직과 자원 활용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 등 민간조직과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자원의 발굴과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각각 의미하고 있다(이석환, 2017).

복지전달체계 일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목표는 수요자인 국민의 맞춤형 복지체감도 제

고, 일선 복지인력의 통합서비스제공여건 마련 및 전문성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김헌, 2016),

이석환(2017)은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문 인력 충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단체장이 여성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을 저조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4) 문재인 정부 복지전달체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전달체계는 과거 정부에서 미흡한 전달체계를 해결하고 개선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국 확대, 복지생태계 구축 등의 구상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과 협력,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는 틀림없다(한동우, 2017).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¹⁾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폭 확충을 제시하고 있고, 주민 중심 행정복지 서비스 혁신 추진 체계 구축,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가 포함되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복지, 전달체계의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정책을 제시한 것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의 세부 과제로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자체 복지공무원 및 방문건강관리 수행 간호직 확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의 내용이 유일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읍면동을 혁신하는 사업(혁신 읍면동 사업)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주민 복지를 위

1)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복지전달 개편내용은 17번 「사회서비스」, 74번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과제에 포함되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정목표 2: ‘더불어 잘사는 경제-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부분에 포함된 세부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다.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부분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이다(강혜규, 2017).

한 행정 혁신까지 챙겨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부문의 중추 전달체계를 독립 행정기관이 아닌 지자체 복지행정부서로 정착시켜가며 겪어왔던 난항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동반된다. 종합행정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세부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한 촘촘한 업무 설계, 서비스 대응 방안 및 관련 기술의 제시와 지원, 일반정과는 차별적인 업무 성과의 파악 및 슈퍼비전 등 전달체계의 종합화, 보편화에 뒤지지 않는 전문화의 기조가 정책 방향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담긴 혁신 읍면동 사업의 핵심 목표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강화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이다. 마을자치 활성화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 주도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최 일선 접점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 및 서비스에 반영해 가야 할 복지업무의 특수성과 전문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마을자치가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강혜규, 2017).

2.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현대사회에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치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여기에서 ‘거버넌스 란’ 지역사회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민과 관이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하여 해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전통적 통치차원(government)에서의 지자체주도는 일방적인 지역사회 개발 정책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졌고, 시민의식의 함양과 여러 여건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차홍봉, 2013).

거버넌스(협치)란 단순히 통치체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방적 정책 결정기관이 아닌 구성원들 간의 또는 조직과 조직 상호 간의 연결망을 강조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사이의 자원혼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의 중앙 통제적 권한보다는 탈중앙화 된, 분절된 권한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서 가버넌스는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조정을 위한 인식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가버넌스는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획일적이고 중앙 통제적이고 수직적인 정책결정을 극복하여 연결망 중심의 수평적인 관계 하에서 다자간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결정기구로 인식하고 있다(지은구 외, 2010).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장기제와는 구별되는 시민사회 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자기조절적인 사회서비스 생산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식적 권위는 없어도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정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기존의 정부 관료제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상호협동과 견제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통치의 패러다임에서 협치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재완 외, 2012).

김보영(2013)은 거버넌스가 계층제나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신뢰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효과적 전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는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과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게임의 법칙 즉 규범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박선희 외, 2017).

대부분 거버넌스에 대한 번역을 협치(協治)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김보영(2013)은 협영(協營)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를 구분 짓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나타내는 협(協)과 수평적인 운영을 의미하는 영(營)을 합성하였던 것이다. 치(治)는 다스린다는 수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거버넌스의 수평적 특성과 대조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채현탁(2014)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를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로 변화시키려는 인식 전환과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지역내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 제한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다차원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개선하려는 지방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과를 만

들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관훈(2013)은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집단·사회·국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치는 무형재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사회 이익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개념적 연결끈이며,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며, 복지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조직,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사회 주체가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하였다. 즉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는 국가 및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쉽과 관련되고, 행위자들의 자율성에 의한 상호협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는 협력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신뢰를 확산시켜 네트워크가 강화된다고 했다.

김상준(2004)은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어떤 집단에 속한 개인의 자기 이해라는 이윤추구와 이윤증식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의 속성과 이타적 행위 등의 순수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 개념도 인간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전제하면서,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Bourdieu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이득 추구라는 관점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박선희 외, 2017 재인용).

3.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네트워크란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조직 간에 상호작용과 자원을 교환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특징으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연계체계를 구축·유지하기 위함이며, 상호의존성과 호혜성, 수평적 관계가 강조된다. 이를 사회복지에 적용하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간 정보 공유, 서비스의 연결 그리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류종훈, 2014).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는 개별 기관의 활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공유된 목적을 가진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된 조직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다(류기형 외, 2015).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즉 필요성에 대한 인식, 목표, 이념적 지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궁극적 가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과 생활보장을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적 요인, 실무자의 소극적 태도, 공식적인 협력채널의 부재 등 협력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류중훈, 2014)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하게 된다. 즉 도움을 주거나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필요로 할 때 네트워크는 필요하게 된다.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회적 교환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네트워크는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필요한 사회적 구조라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 집단의 영역을 넘어 조직과 조직사회의 사회적 교환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란 민간부분의 개인, 집단, 조직과 관영역의 개인, 집단, 조직이 통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실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교환체계이자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지은구 외, 20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의 상설적인 체계이며, 네트워크 원리에 운영되는 대표적인 조직체이다. 지역사회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가장 가까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며, 대상 인구의 공통적인 특성에 기초한 보편적인 서비스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개별적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잠재된 자원을 개발하는 데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더구나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여 민간자원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복지 의식 함양을 가져올 수 있다(홍현미라 외, 2010).

최재성은 서울시에 대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로는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해소,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도모,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사회복지서비스전달에서의 민관협력의 중요성 확산,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네트워

크 사업의 한계로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인한 경직성, 민간기관의 업무과중, 유사사업의 중복수행, 정보시스템 부족, 실적위주의 인센티브 시스템, 민간기관의 참여 동기 취약 등을 제시하였다(최재성, 2014).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의체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함철호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민간과 공공으로 구성되어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여 보건복지통합서비스가 가능하나 전달체계의 최하위 네트워크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위 네트워크인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함철호, 2015).

제주지역 지역사회복지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공급기관들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수요자들의 욕구와 문제에 근거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서비스 공급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역사회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남진열, 2004).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2015년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

급여법'으로 약칭)이 제정·시행되면서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되었다. 지역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전자에는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건의로 되어있는 반면 후자에는 심의·자문으로 되어있다. 또한 전자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후자에는 빠져있다. 범주에서 전자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이고 후자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연계체계 면에서 후자는 전자에 없는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배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급여법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능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 하도록 설계 되었다. 첫째,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이다. 이는 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는 기능이다. 둘째, 서비스 부문 간 연계 강화 기능이다. 이는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과 보건복지 등 관련 부문 간 연계 및 협력강화 기능을 말한다(최찬욱, 20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안내(보건복지부, 2017)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체계의 근원적 변화이다. 정부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하고 특히, 2012년 1월 개정된 사회복지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을 지향되었다.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 협력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

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되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 협력 활성화의 중요성 부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문제를 인식,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 발굴 및 심층상담하며, 맞춤형 복지 전달팀 운영 및 복지업무 전문성 강화하여 지자체 여건,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 전달팀 설치로 통합 서비스 활성화하고 더불어 지역주민.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총량 확충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 강화로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까지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기존에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되고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토대로 한 민관협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진실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지역공동체란 지역 복지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 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지역의제 발굴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수요자에게 최대한 제공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활용 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더욱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민관협력의 공간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축소되고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넷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장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의 가능성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보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바,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된다. 특히,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통합서

비스 기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분출,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협력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보건복지부, 2017).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당시 정부의 추진 목적은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하는 것이다.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하고 지역내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급여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한다.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 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복지대상자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추진한다.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 되면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주

민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화 만드는 것이다. 즉, 마을 또는 생활권역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 연계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7).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및 구성

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급여법 시행이전인 2015. 6. 30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복지협의체로 명명되어 시군구별 구성·운영되어 왔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및 건의를 하는 기구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위원은 위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두 법령상 하도록 하고 있고, 자격은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동일하며,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조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

구 분	기 준 (사회복지사업법)	현 행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및 기능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연계.협력 강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 추천자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임명직/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임기	2년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제한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기간)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읍면동별 10명 이상), 읍면동장과 민간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협의체/실무협의체 조직운영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비고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급 상근직원 배치('14년, 200명)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구성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위기가정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

전망 구축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 봉사, 사회공헌 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 위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을 하면 위원의 자격은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을 포함하며,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도 가능하며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도 위촉대상자가 된다.

<표 2-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

구 분	기 존 (사회복지사업법)	현 행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기 능		-위기 가정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 봉사, 사회공헌 등)
위 촉 요 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처우수준		-위촉, 명예직(민간 위원)
위원회 구 성		-동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동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

		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원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비 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안내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과 기능

① 운영원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안내(보건복지부, 2017)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성 원칙이다.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운영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 핵심사업도 병행 추진(비예산 사업 포함)해야 한다.

둘째, 참여성 원칙이다.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이다.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 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다양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연계 등 원활한 기능 수행될 것이다.

셋째, 협력성 원칙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이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

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통합성 원칙이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연대성 원칙이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 복지 활동 참여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주체의 연대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여섯째, 예방성 원칙이다.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보건복지부(2017)가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기능은 협치(governance) 기능, 연계(network)기능, 통합서비스 기능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표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서비스 기능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출처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안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둘째,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 셋째,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넷째,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다섯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섯째,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일곱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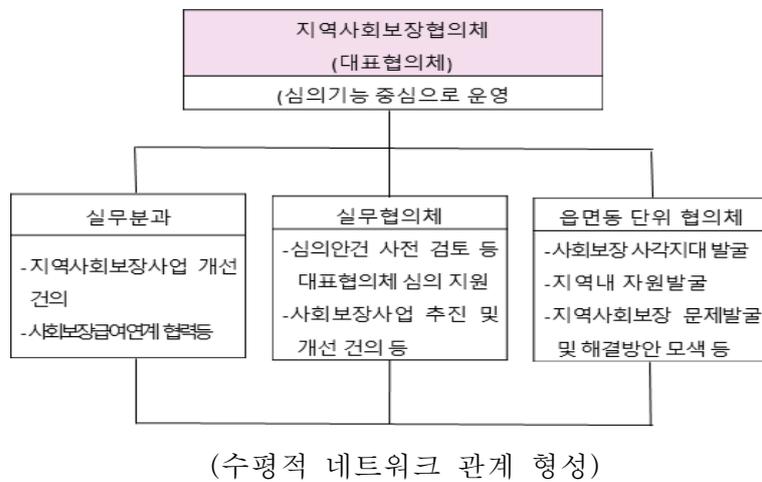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체별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협의체로 분류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체별 역할

주체별	역할
대표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고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위원회 운영 : 대표협의회 심의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자문기능 수행
실무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고하는 관계 기관.법인.

	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읍면동단위 협의체	- 관할지역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운영 -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출처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안내'

[그림 2-1]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

5. 선행연구

본 연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능개선 및 확대 개편되었으나,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계속 변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참여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전후의 선행연구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향순 등(2011)은 지역사회복지의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각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성보다 다양한 기관과 인사를 포함시키는 포괄성, 공공과 민간이 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민주성에 중점을 두고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사회복지기관, 시설 관련 분야의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위원구성 시 공개적 지원 절차, 민간과 공공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동등한 참여 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강(2009)은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 주민들의 복지참여도가 중요해지면서 지역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복지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를 들었다.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목포시의 상황에 따라 목포시지역 사회복지협의체와 목포시민생활종합지원의회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실질적인 기능이 지역사회복지의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미비, 주민생활 민관협의체의 기능과 위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역사회복지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 통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들었다.

홍선미(2016)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대표를 포함한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포괄성만 아니라 지역성(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참여성(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연대성(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을 공유·해결)을 높일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무분과의 구성을 읍면동 사회복지보장협의체를 대표하는 소생활권 단위의 지역별 분과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에 대상별(대상자 특성별 욕구 중심) 또는 기능별(통합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기능 중심)로 구성하던 방식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동복지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하관계를 갖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별도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읍면동 협의체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와 협의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직간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군구와 동 간의 수평적 연계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류기형 등(2009)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련 조직들 간 서비스 연계실태를 분석하였다. 부산 동구지역 사회복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령이 낮고 교육의 횟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네트워킹을 위한 실질인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네트워킹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시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안혜영(2013)은 지역복지 추진체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과제 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는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동시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야하고, 공공-민간협력의 핵심은 ‘민간이 책임질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공공영역과 민간기관의 역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관련제도의 개혁과 보편적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오민수(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노원구, 성동구와 부천시를 분석하여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의 의의를 모색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과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읍면동에서 민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고, 주요 핵심 참여자가 개인(주민)임으로 서비스 공제결정 및 생산에 있어서 진정한 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했다.

최찬욱(2015)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에 대해 민간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식과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아울러 설문 조사까지 실시하여 운영체계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지를 가져야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네트워크 추진과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사업추진을 하면 거버넌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기용(2016)은 포항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협의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시행 초기이었으나 담당공무원들이 협의체에 대한 운영 목적 및 역할에 대하여 대체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읍면동 복지팀의 직렬에 따라 인식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희 등(2017)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버넌스에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민관협력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하고, 특히 보다 소규모 단위인 동(洞)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화(2017)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복지인식이 복지허브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위촉기간과 사회복지시설 근무 여부에 따라 복지인식이 다르게 나타났고, 협의체위원의 복지인식의 높을수록 복지허브화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채현탁(2016)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주인공으로 나아가도록 주체성을 발현시키는 방안, 민간과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영역이 지원하는 형태로서 민관협력 및 주민참가활동을 만들어 가려는 세부전략 등을 포함해야 하며, 단순히 공공 주도형 혹은 공공 참여형 민관협력 및 주민참가가 아닌 주민 주체성의 실현과 연결된 민관협력 및 주민조직화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적응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함철호(2017)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에서 특정지역 1개동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한 결과, 자치단체장이 관심과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노력정도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활성화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헌신적인 노력, 즉 토착리더를 발굴하고 민간역량을 주민조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과 읍면동 같은 공공기관이 협력할 때 활성화되기 쉽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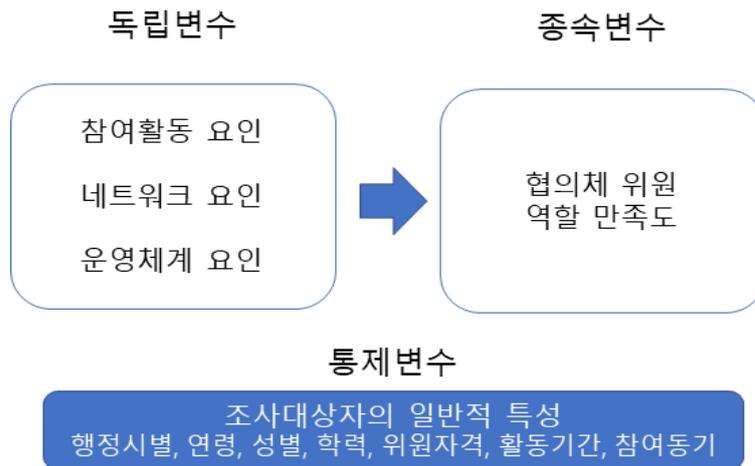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존의 문헌을 통해 기본적 개념들과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즉,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 가버넌스와 네트워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들 주제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활동 요인과 네트워크 요인, 운영체계에 요인에 따른 역할 만족도를 탐구하여, 이들 요인들 간에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연구모형

이들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활동 요인 중 공무원 관심도 수준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활동 요인 중 자발적 참여가 역할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요인 중 수평적 신뢰관계가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요인 중 정보공유 수준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요인 중 자원구성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요인 중 구조 및 협력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협의체 활동과정에서 역할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자를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제주지역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제주시 지역은 26개 읍면동에 485명이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귀포시 지역은 17개 읍면동에 36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주지역 총 43개 읍면동에 846명이 위촉 운영되고 있다.

<표 3-1>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2018. 1월 현재)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주부	기타	남	여
계	846	61	5	4	3	114	276	58	27	81	217	381	465
제주시	485	37	2	3	3	75	142	18	16	45	144	210	275
서귀포시	361	24	3	1	0	39	134	40	11	36	73	171	19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2018).

이 연구는 지역 특성상 43개 읍면동 전수조사나 표본조사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표 3-1>과 같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의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제주시 지역 10개 읍면동 협의체 위원 153명, 서귀포시 지역 9개 읍면동 협의체 위원 159명 전체 312명을 대상으로 표본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지 257부(회수율 82%)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 4부와 서귀포시 설문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23부를 제외한 243부를 분석하였다.

<표 3-2> 설문지 배포

구분	설문지배포			설문지 수거			분석된 설문지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부	312	153	159	266	130	136	243	127	116
구성비(%)	100	49.0	51.0	100	48.9	51.1	100	52.3	44.7

2) 설문지 구성과 신뢰성 검증

설문지는 최찬옥(2015)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인들을 기초하여 구성하였으며, 협의체 위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8문항, 참여활동에 관한 인식 10문항, 네트워크에 관한 인식 9문항, 운영체계에 관한 인식 9문항, 역할 만족도 수준 7문항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참여활동 요인은 공무원관심도(2개 문항)와 참여도(8개 문항)로 구성하였으며 네트워크 요인은 수평적 신뢰관계(5개 문항), 정보공유(4개 문항), 운영체계에 관한 것은 자원(4개 문항)과 구조

및 협력(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요인의 명칭과 문항 수, 설문문항 번호는 <표 3-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변수들을 가지고 설문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를 구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인 0.7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3-3> 구성변수 및 신뢰도 측정

요인명		문항수	구성 설문 문항 번호	Cronbach's α
조사항목	측정변수			
일반적 특성	행정시별, 읍면동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자격, 활동기간, 동기	8	1, 2, 3, 4, 5, 6, 7, 8	-
참여활동	공무원 관심도	2	1, 2	.793
	참여도	8	3, 4, 5, 6, 7, 8, 9, 10	.869
네트워크	수평적 신뢰관계	5	1, 2, 3, 4, 5	.892
	정보공유	4	6, 7, 8, 9	.864
운영체계	자원	4	1, 2, 3, 4	.812
	구조 및 협력	5	5, 6, 7, 8, 9	.878
역할 만족도 수준	성취만족도	2	1, 2	.775
	기능만족도	5	3, 4, 5, 6, 7	.900
계		43		

3.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활동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주지역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얻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실시한 모든 설문문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셋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검증을 하였다.

다섯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T-test 분석, ANOVA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도구로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일반적 특성을 행정시별, 읍면동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위원자격, 활동기간, 참여 동기 등 8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행정시 (n=243)	제주시	127	52.3
	서귀포시	116	47.7
읍면동 구분 (n=243)	읍면	75	30.9
	동	168	69.1
성별 (n=243)	남	94	38.7
	여	149	61.3
연령 (n=242)	30대 이하	5	2.1
	40대	46	19.0
	50대	124	51.2
	60대 이상	67	27.7
학력 (n=242)	중졸 이하	17	7.0
	고졸	105	43.4
	전문대졸	42	17.4
	대졸	58	24.0
	대학원 재학 이상	20	8.3
위원자격 (n=239)	단체 등 실무자	54	22.6
	담당공무원	8	3.3
	비영리 단체 추천	9	3.8
	이장, 통장	9	3.8
	주민자치위원, 봉사단체	72	30.1
	기타 열의가 있는 사람	87	36.4

활동기간 (n=241)	1년 미만	67	27.8
	1년 이상 ~ 2년 미만	56	23.2
	2년 이상 ~ 32년 미만	63	26.1
	3년 이상	55	22.8
참여동기 (n=240)	자발적 참여	104	43.3
	동장추천	28	11.7
	봉사단체 추천	49	20.4
	리.통장 추천	14	5.8
	지역주민 추천	45	18.8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243명중 행정시별로 분류해 보면 제주시가 127명(52.3%), 서귀포시는 116명(47.7%)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읍면동으로 구분해보면 읍면지역은 75명(30.9), 동지역은 168명(69.1%)으로 동지역에 활동하는 협의체 위원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149명(61.3%)으로 남성 94명(38.7%)보다 많게 조사 되었다. 연령대는 50대가 124명(51.2)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60대는 67명(27.7%), 40대는 46명(19.0%), 30대 이하는 5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105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58명(24.0%), 전문대졸 42명(17.4%), 대학원 재학이상 20명(8.3%), 중졸이하 17명(7.0%)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원의 자격을 보면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는 54명(22.6%)이며,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8명(3.3%),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이장.통장은 각 각 9명(3.8%)이며,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은 72명(30.1%), 그 밖의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 87명(36.4%)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이 가장 많이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위원들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한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67명(27.8%), 1년 이상 2년 미만(23.2%), 2년 이상 3년 미만이 63명(26.1%), 3년 이상이 55명(22.8%)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는 본인 자발적 참여가 104명

(43.3%)으로 절반에 가깝고, 동장의 추천을 통해 28명(11.7%) 위촉되었고, 봉사단체 추천 49명(20.4%), 리.통장모임 추천 14명(5.8%), 지역주민 추천 45명(18.8%)으로 조사되었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태

본 연구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활동 요인을 연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협의체별 자체교육 주기와 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조사대상자 자신의 회의참석 횟수 등 3문항을 구성하여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표 4-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태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협의체별 자체 교육 주기 (n=218)	실시한 적 없다.	14	6.4
	6개월에 한번	105	48.2
	3개월에 한번	62	28.4
	매달 한번	37	17
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n=228)	1 ~ 2회	4	1.8
	3 ~ 4회	9	3.9
	5 ~ 6회	10	4.4
	7 ~ 8회	6	2.6
	9회 이상	199	87.3
협의체 회의 참석 횟수 (n=224)	1 ~ 2회	6	2.7
	3 ~ 4회	19	8.5
	5 ~ 6회	33	14.7
	7회 이상	166	74.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를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년 동안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교육주기는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다가 14명(6.4%)이며, 6개월에 한번 실시했다는 105명(48.2%), 3개월에 한번 62명(28.4%)이며, 매달 실시했다는 37명(17%)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동에서 지난 1년 동안 협의체 회의개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2회

4명(1.8%), 3~4회가 9명(3.9%), 5~6회가 10명(4.4%), 7~8회 6명(2.6%), 9회 이상이 199명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개최가 잘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를 개최 시 조사대상자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회의 참석 횟수를 조사한 결과 1~2회 6명(2.7%), 3~4회가 19명(8.5%), 5~6회가 33명(14.7%)이며, 7회 이상이 166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1년 동안 대다수의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개선할 점

앞으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가장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243명중 206명이 응답하였고 37명이 미 응답하였다. 그중 51명이 2개 문항이상 중복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4-1>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개선할 점과 같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확대해야한다 43명(14.5%), 위원들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하다 89명(30.1%), 사회보장대상자를 보는 인식 개선 필요하다 35명(1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38명(12.8%), 사회보장 대상자들을 위한 재정 필요하다 43명(14.5%), 월례회 전 복지대상자 등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파악을 해야한다 36명(12.2%),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직렬이 되어야 한다는 12명(4.1%)이다. 위원들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하다가 89명(3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 직렬이 되어야 한다는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4-3>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개선할 점

구 분	빈도(명)	비율(%)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하고 있는 위원들의 비율확대	43	14.5
위원들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89	30.1
위원들이 사회보장대상자를 보는 인식 개선 필요	35	1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38	12.8

사회보장 대상자들을 위한 재정 필요	14	5.5
월례회 전 복지대상자 등 위기가구 현장방문 실태파악	36	12.2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직렬이 되어야	12	4.1
계	253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활동 요인

참여활동의 세부요인으로 공무원 관심도(2문항), 참여도(8문항)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활동 요인 수준은 4.16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관심도(평균=4.16)가 참여도(평균=4.0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4> 참여활동 요인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 관심도	243	4.16	.60
참여도	243	4.09	.51
전 체	243	4.16	.49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요인

네트워크의 세부요인으로 수평적 신뢰관계(5문항), 정보공유(4문항)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 요인 수준은 4.16으로 나타났고 수평적 신뢰관계(평균=4.22)가 정보공유(평균=4.0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5> 네트워크 요인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수평적 신뢰관계	243	4.22	.52
정보공유	243	4.08	.59
전 체	243	4.16	.52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요인

운영체계의 세부요인으로 자원(4문항), 구조 및 협력(5문항)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체계 요인 수준은 3.88로 나타났으며, 구조 및 협력(평균=4.00)이 자원(평균=3.7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6> 운영체계 요인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자원	242	3.73	.64
구조 및 협력	240	4.00	.55
전 체	242	3.88	.53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수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수준의 세부요인으로 성취도(2문항), 기능중심(5문항)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3.99로 나타났으며, 성취만족도(평균=4.03)가 기능만족도(평균=3.9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7> 역할 만족도 수준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성취만족도	242	4.03	.62
기능만족도	242	3.97	.61
전 체	242	3.99	.58

3. 일반적 특성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활동, 네트워크, 운영체계와 역할 만족도 수준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을 행정시별, 읍면과 동의 구분, 성별, 연령별, 학력별, 활동기간, 참여 동기에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F-검정)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7>와 같다. 참여활동에 대한 성별 간 차이는 협의체에 대한 공무원 관심도는 남자(평균=4.48)가, 여자(평균=4.3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협의체 위원참여도는 남자(평균=4.03)보다 여자(평균=4.13)가 높게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는 남자(평균=4.25)가, 여자(평균=4.20)보다 높았고, 정보공유는 남자(평균=4.03)보다 여자(평균=4.11)가 높게 나타났다. 운영체계의 자원요인에 관한 차이는 남자(평균=3.66)보다 여자(평균=3.78)가, 구조 및 협력관계 요인도 남자(평균=3.99)보다, 여자(평균=4.01)가 높게 나타났으며, 협의체 위원 역할 만족도 수준의 성취만족도 요인을 보면 남자(평균=4.02)보다, 여자(평균=4.04)가, 기능만족도에서도 남자(평균=3.92)보다, 여자(평균=4.00)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 모든 조사항목은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표 4-8>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인	항목	남(n=94)		여(n=149)		t	유의확률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활동	공무원 관심도	4.48	.64	4.38	.58	1.301	.195
	참여도	4.03	.57	4.13	.47	-1.381	.169
네트워크	수평적 신뢰관계	4.25	.53	4.20	.52	.779	.437
	정보공유	4.03	.65	4.11	.55	-.901	.361
운영체계	자원	3.66	.67	3.78	.61	-1.468	.143
	구조 및 협력	3.99	.58	4.01	.53	-.214	.831
역할 만족도 수준	성취만족도	4.02	.61	4.04	.62	-.344	.731
	기능만족도	3.92	.67	4.00	.58	-.975	.331

*.p<.05, **p<.01, ***p<.001

2) 행정시별 집단 간 차이 분석

행정시 간 집단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8>와 같다.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제주시 평균=4.28, 서귀포시 평균=4.57) 및 참여도(제주시 평균=4.02, 서귀포시 평균=4.17),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제주시 평균=4.15, 서귀포시 평균=4.29)와 정보공유(제주시 평균=4.03, 서귀포시 평균=4.13), 운영체계 자원요인(제주시 평균=3.64 서귀포시 평균=3.84)과 구조 및 협력(제주시 평균=3.96, 서귀포시 평균=4.04), 성취만족도(제주시 평균=4.00, 서귀포시 평균=4.06)에 따른 역할 만족도 수준과 기능만족도(제주시 평균=3.94, 서귀포시 평균=4.00) 등 조사항목 모두 서귀포시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활동 요인의 공무원 관심도와 참여도는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도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네트워크 요인의 정보공유나, 운영체계 요인의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와 기능만족도의 역할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행정시별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인	항목	제주지 (n=127)		서귀포지 (n=116)		t	유의 확률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활동	공무원 관심도	4.28	.75	4.57	.51	-3.952***	.000
	참여도	4.02	.53	4.17	.49	-2.178*	.030
네트워크	수평적 신뢰관계	4.15	.51	4.29	.53	-1.999*	.047
	정보공유	4.03	.57	4.13	.60	-1.228	.221
운영체계	자원	3.64	.62	3.84	.64	-2.420*	.016
	구조 및 협력	3.96	.54	4.04	.56	-1.028	.305
역할 만족도 수준	성취만족도	4.00	.58	4.06	.65	-.762	.447
	기능만족도	3.94	.59	4.00	.64	-.695	.488

*.p<.05, **p<.01, ***p<.001

3) 읍면지역과 동지역 집단 간 차이점

읍면지역과 동지역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9>와 같다.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읍면지역 평균=4.48, 동지역 평균=4.39) 및 참여도(읍면지역 평균=4.18, 동지역 평균=4.05),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읍면지역 평균=4.28, 동지역 평균=4.19)와 정보공유(읍면지역 평균=4.17, 동지역 평균=4.04), 운영체계의 자원 요인(읍면지역 평균=3.78, 동지역 평균=3.71)과 구조 및 협력 관계(읍면지역 평균=4.02, 동지역 평균=3.99)와 기능만족도(읍면지역 평균=4.01, 동지역 평균=4.39)는 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성취만족도(읍면지역 평균=4.03, 동지역 평균=4.04) 수준은 동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나 변인별 조사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정에 <표4-1>과 같이 법령에 한정된 위원의 자격과 지역 내 자원 수준이 비슷하여 읍면과 동지역간의 정서적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 4-10>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 차이 분석

변인	항목	읍면(n=75)		동(n=168)		t	유의확률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활동	공무원 관심도	4.48	.54	4.39	.63	1.115	.266
	참여도	4.18	.45	4.05	.54	1.867	.063
네트워크	수평적 신뢰관계	4.28	.50	4.19	.53	1.286	.200
	정보공유	4.17	.53	4.04	.60	1.704	.090
운영체계	자원	3.78	.55	3.71	.67	.710	.478
	구조 및 협력	4.02	.54	3.99	.55	.460	.646
역할 만족도 수준	성취만족도	4.03	.61	4.04	.62	-.101	.920
	기능만족도	4.01	.55	3.93	.64	.600	.549

*.p<.05, **p<.01, ***p<.001

4)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10>와 같다.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고졸이하 평균=4.36, 전문대졸 이상 평균=4.48) 및 참여도(고졸이하 평균=4.06, 전문대졸 이상 평균=4.12),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고졸이하 평균=4.15, 전문대졸 이상 평균=4.29)와 정보공유(고졸이하 평균=4.03, 전문대졸 이상 평균=4.13), 운영체계의 자원요인(고졸이하 평균=3.68, 전문대졸 이상 평균=3.79)과 구조 및 협력(고졸이하 평균=3.98, 전문대졸 이상 평균=4.02), 성취만족도 수준(고졸이하 평균=4.00, 전문대졸 이상 평균=4.07)과 기능만족도(고졸이하 평균=3.93 전문대졸 이상 평균=4.01) 등 조사항목 전부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인 경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인	항목	고졸이하 (n=122)		전문대졸 이상 (n=120)		t	유의 확률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활동	공무원 관심도	4.36	.57	4.48	.63	-1.481	.140
	참여도	4.06	.48	4.12	.55	-1.011	.313
네트워크	수평적 신뢰관계	4.15	.47	4.29	.57	-2.050*	.042
	정보공유	4.03	.55	4.13	.62	-1.442	.151
운영체계	자원	3.68	.59	3.79	.68	-1.307	.192
	구조 및 협력	3.98	.50	4.02	.60	-.601	.549
역할 만족도 수준	성취만족도	4.00	.57	4.07	.66	-.844	.399
	기능만족도	3.93	.58	4.01	.65	-1.072	.285

*.p<.05, **.p<.01, ***.p<.001

5) 참여 동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협의체 위원들의 참여 동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11>와 같다.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자발참여 평균=4.43, 추천참여 평균=4.40) 및 참여도(자발참여 평균=4.15, 추천참여 평균=4.04),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자발참여 평균=4.29, 추천참여 평균=4.15)와 정보공유(자발참여 평균=4.14, 추천참여 평균=4.02), 운영체계의 자원요인(자발참여 평균=3.83, 추천참여 평균=3.66)과 구조 및 협력요인(자발참여 평균=4.06, 추천참여 평균=3.94), 성취만족도 수준(자발참여 평균=4.18, 추천참여 평균=3.92)과 기능만족도(자발참여 평균=4.04, 추천참여 평균=3.91) 등 조사항목 모두의 평균값이 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수평적 신뢰관계, 운영체계의 자원요인, 위원 성취만족도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참여활동 요인 및 네트워크의 정보공유, 운영체계요인의 구조 및 협력, 기능만족도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12> 참여 동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변인	항목	자발참여 (n=104)		추천참여 (n=136)		t	유의확률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활동	공무원 관심도	4.43	.62	4.40	.59	.452	.652
	참여도	4.15	.56	4.04	.48	1.730	.085
네트워크	수평적 신뢰관계	4.29	.53	4.15	.51	2.133*	.034
	정보공유	4.14	.63	4.02	.56	1.527	.128
운영체계	자원	3.83	.68	3.66	.60	2.065*	.040
	구조 및 협력	4.06	.57	3.94	.53	1.624	.106
역할 만족도 수준	성취만족도	4.18	.64	3.92	.58	3.189**	.002
	기능만족도	4.04	.68	3.91	.56	1.526	.129

*.p<.05, **.p<.01, ***.p<.001

6)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협의회 위원들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한 결과 <표 4-12>와 같다. 평균을 보면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40대 이하 평균=4.47, 50대 평균=4.47, 60대 이상 평균=4.27), 참여도(40대 이하 평균=4.15, 50대 평균=4.12, 60대 이상 평균=3.99)와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40대 이하 평균=4.35, 50대 평균=4.25, 60대 이상 평균=4.06)와 정보공유(40대 이하 평균=4.16, 50대 평균=4.15, 60대 이상 평균=3.90), 운영체계의 자원요인(40대 이하 평균=3.96, 50대 평균=3.73, 60대 이상 평균=3.56), 구조 및 협력관계(40대 이하 평균=4.08, 50대 평균=4.03, 60대 이상 평균=3.88), 성취만족도 수준(40대 이하 평균=4.14, 50대 평균=4.06, 60대 이상 평균=3.90), 기능 만족도 수준(40대 이하 평균=4.11, 50대 평균=4.00, 60대 이상 평균=3.79) 모든 항목이 40대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네트워크의 수평적 신뢰관계(유의확률=0.007)와 정보공유(유의확률=0.010), 운영체계 자원(유의확률=0.004), 기능만족도(유의확률=0.01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은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종속변수	활동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공무원 관심도	40대 이하	51	4.47	.64	2.583	.078
	50대	124	4.47	.61		
	60대 이상	67	4.23	.55		
참여도	40대 이하	51	4.15	.58	1.872	.156
	50대	124	4.12	.51		
	60대 이상	67	3.99	.45		
수평적 신뢰관계	40대 이하	51	4.35	.53	5.144**	.007
	50대	124	4.25	.52		
	60대 이상	67	4.06	.49		
정보공유	40대 이하	51	4.16	.66	4.730	.010
	50대	124	4.15	.55		
	60대 이상	67	3.90	.59		
자원	40대 이하	51	3.96	.74	5.659**	.004
	50대	124	3.73	.64		
	60대 이상	67	3.56	.50		
구조및협력	40대 이하	51	3.96	.60	2.205	.113
	50대	124	4.03	.54		
	60대 이상	67	3.88	.52		
성취만족도	40대 이하	51	4.14	.76	2.268	.106
	50대	124	4.06	.60		
	60대 이상	67	3.90	.48		
기능만족도	40대 이하	51	4.11	.68	4.297*	.015
	50대	124	4.00	.59		
	60대 이상	67	3.97	.58		

*.p<.05, **p<.01, ***p<.001

7) 활동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한 결과 <표 4-13>와 같다. 평균을 보면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는 2년 이상 3년 미만(평균=4.48)이 가장 높으며, 1년 미만(평균=4.45)과 3년 이상(평균=4.45)은 비슷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평균=4.29)이 가장 낮게 조사 되었으며. 참여도는 1년 미만(평균=4.45), 2년 이상 3년 미만(평균=4.48), 3년 이상(평균=4.45),

1년 이상 2년 미만(평균=4.29)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는 2년 이상 3년 미만(평균=4.24), 3년 이상(평균=4.22), 1년 이상 2년 미만(평균=4.21), 1년 미만(평균=4.20)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공유는 1년 미만(평균=4.13), 2년 이상 3년 미만(평균=4.09), 3년 이상(평균=4.06), 1년 이상 2년 미만(평균=4.03)순으로 조사 되었다. 운영체계의 자원요인은 2년 이상 3년 미만(평균=3.82), 1년 미만(평균=3.73), 1년 이상 2년 미만(평균=3.69), 3년 이상(평균=3.67) 순서이며, 구조 및 협력요인은 3년 이상(평균=4.07), 2년 이상 3년 미만(평균=4.05), 1년 미만(평균=3.96), 1년 이상 2년 미만(평균=3.93) 순으로 나타났다. 역할에 대한 만족도 수준의 성취만족도는 2년 이상 3년 미만(평균=4.15, 3년 이상(평균=4.06), 1년 미만(평균=3.98), 1년 미만(평균=3.95)순이며, 기능만족도는 1년 이상 3년 미만(평균=4.05, 3년 이상(평균=3.99), 1년 미만(평균=3.95), 1년 미만(평균=3.89) 순으로 조사됐다. 활동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는 모든 항목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활동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종속변수	활동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공무원 관심도	1년 미만	67	4.45	.53	1.220	.303
	1년이상 2년미만	56	4.29	.71		
	2년이상 3년미만	63	4.48	.55		
	3년이상	55	4.45	.63		
참여도	1년 미만	67	4.15	.39	1.864	.136
	1년이상 2년미만	56	3.95	.58		
	2년이상 3년미만	63	4.13	.54		
	3년이상	55	4.12	.54		
수평적 신뢰관계	1년 미만	67	4.20	.51	.074	.974
	1년이상 2년미만	56	4.21	.48		
	2년이상 3년미만	63	4.24	.60		
	3년이상	55	4.22	.52		
정보공유	1년 미만	67	4.13	.511	.282	.838
	1년이상 2년미만	56	4.03	.60		
	2년이상 3년미만	63	4.09	.60		

	3년이상	55	4.06	.66		
자원	1년 미만	67	3.73	.62	.654	.581
	1년이상 2년미만	56	3.69	.68		
	2년이상 3년미만	62	3.82	.60		
	3년이상	55	3.67	.67		
구조및협력	1년 미만	67	3.96	.44	.868	.498
	1년이상 2년미만	56	3.93	.57		
	2년이상 3년미만	61	4.05	.57		
	3년이상	54	4.07	.58		
성취만족도	1년 미만	67	3.95	.65	1.282	.281
	1년이상 2년미만	56	3.98	.67		
	2년이상 3년미만	62	4.15	.58		
	3년이상	55	4.06	.55		
기능만족도	1년 미만	67	3.89	.60	.775	.509
	1년이상 2년미만	56	3.95	.65		
	2년이상 3년미만	62	4.05	.60		
	3년이상	55	3.99	.62		

*.p<.05, **.p<.01, ***.p<.001

4. 상관관계 분석

<표 4-15>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변인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관심도는 참여도(0.578), 수평적 신뢰관계(0.517), 정보공유(0.477), 자원(0.397), 구조 및 협력(0.463), 성취만족도(0.374), 기능만족도(0.379), 행정시별(0.244)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도는 수평적 신뢰관계(0.670), 정보공유(0.741), 자원(0.552), 구조 및 협력(0.683), 성취만족도(0.518), 기능만족도(0.589), 행정시별(0.139)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수평적 신뢰관계는 정보공유(0.795), 자원(0.516), 구조 및 협력(0.743), 성취만족도(0.604), 기능만족도(0.636), 학력(0.131), 행정시별(0.128)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0.197)은 부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유는 자원(0.554), 구조 및 협력(0.738), 성취만족도(0.556), 기능만족도(0.641), 학력(0.13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0.165)은 부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원은 구조 및 협력(0.649), 성취만족도(0.470), 기능만족도(0.600), 행정시(0.154), 참여 동기(=0.133)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0.212)은 부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구조 및 협력은 성취만족도(0.643), 기능만족도(0.685)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0.127)은 부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협의위원들의 협의체 활동과정에서의 성취만족도가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능중심(0.721), 참여 동기(0.206)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0.133)은 부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기능만족도는 연령(-0.182)에 부적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연령은 학력(-0.316)과 행정시(-0.282)에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읍면동 구분과 활동기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공무원 관심도	1														
2. 참여도	.578**	1													
3. 수평적 신뢰관계	.517**	.670**	1												
4. 정보 공유	.477**	.741**	.795**	1											
5. 자원	.397**	.552**	.516**	.554**	1										
6. 구조 및 협력	.463**	.683**	.743**	.738**	.649**	1									
7. 성취 만족도	.374**	.518**	.604**	.556**	.470**	.643**	1								
8. 기능 만족도	.379**	.589**	.636**	.641**	.600**	.685**	.721**	1							
9. 성별	-.083	.089	-.050	.060	.094	.014	.022	.063	1						
10. 연령	-.120	-.115	-.197	-.165	-.212**	-.127	-.133*	-.182*	.002	1					
11. 학력	.085	.065	.131*	.093	.084	.039	.055	.069	-.244**	-.316**	1				
12. 행정시	.244**	.139*	.128*	.079	.154*	.066	.049	.045	-.036	-.282**	.024	1			
13. 읍면동	-.072	-.119	-.083	-.109	-.046	-.030	.007	-.039	.055	-.040	.039	.086	1		
14. 참여 동기	.029	.114	.137*	.100	.133*	.105	.206**	.101	-.064	-.001	.088	-.038	-.025	1	
15. 활동 기간	.034	.011	.020	-.030	-.008	.088	.096	.075	.025	.101	-.043	-.037	-.048	.042	1

*.p<.05, **.p<.01, ***.p<.001

5.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역할만족도(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성취도에 따른 역할만족도(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표 4-16>와 같다. 분석결과 성취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에서 공차한계는 0.1이상으로 다중공선상에 문제가 없으며, Dubin-Watson(2.119) 값은 2에 가깝게 분포되어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며, 설명력은 48.3%이었다.

일반적 특성의 참여 동기,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운영체계 요인의 구조 및 협력은 통계적($p < .05$)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의 성별, 연령, 학력, 행정시, 읍면동, 활동기간, 참여활동의 공무원 관심도, 참여도, 네트워크요인의 정보공유,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의 참여 동기($\beta = .116, p = 0.021$)는 자발적 참여일수록 성취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beta = .252, p = 0.006$)가 긍정적일수록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성취만족도)가 높으며, 운영체계 요인의 구조 및 협력($\beta = .356, p = 0.000$)도 긍정적일수록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으며, 구조 및 협력이 가장 높으며, 수평적 신뢰관계, 참여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6> 협의체 위원들의 성취만족에 따른 역할 만족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β)			공차	VIF	
(상수)	.457	.353		1.295	.197			
일반적 특성	성별	.014	.067	.011	.208	.835	.862	1.160
	연령	-.026	.050	-.029	-.523	.602	.782	1.279
	학력	-.016	.067	-.013	-.233	.816	.812	1.232
	행정시	-.053	.066	-.043	-.806	.421	.835	1.198
	읍면동	.058	.068	.043	.860	.391	.947	1.056
	참여동기	.146	.062	.116	2.332*	.021	.943	1.061
참여활동	활동기간	.035	.028	.063	1.258	.210	.947	1.056
	공무원 관심도	.040	.064	.039	.620	.536	.598	1.672
	참여도	.053	.099	.044	.532	.595	.347	2.883
네트워크	수평적 신뢰관계	.298	.107	.252	2.792**	.006	.289	3.460
	정보공유	.012	.100	.011	.121	.904	.261	3.829
운영체계	자원	.050	.066	.052	.768	.443	.508	1.969
	구조 및 협력	.401	.101	.356	3.966***	.000	.292	3.425

R=0.695, R²=0.483, 수정된R²=0.453**,

F=15.818, P=0.000, Durbin-Watson=2.119

더미변수 : 성별(남=0, 여=1), 행정시(제주시=0, 서귀포시=1), 읍면동(읍면=0, 동=1), 참여 동기(비자발적=0, 자발적=1)

*.p<.05, **.p<.01, ***.p<.001

2) 역할만족도(기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만족도(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표 4-17>와 같다. 분석결과 성취도에 대한 회귀모형에서 공차한계는 0.1이상으로 다중공선상에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2.119) 값은 2에 가깝게 분포되어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며, 설명력은 56.9%이었다.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 구조 및 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의 성별, 연령, 학력,

행정시, 읍면동, 참여 동기, 활동기간, 참여활동의 공무원 관심도, 참여도, 네트워크요인의 정보공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beta=.196$, $p=0.018$)가 긍정적일수록 성취만족도가 높아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으며,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beta=.236$, $p=0.000$)과 구조 및 협력($\beta=.224$, $p=0.007$)도 긍정적일수록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으며,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이 가장 높으며, 구조 및 협력,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협의체 위원들의 기능만족에 따른 역할 만족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β)			공차	VIF
(상수)	.246	.323		.762	.447		
일반적 특성	성별	.018	.061	.014	.292	.771	.862 1.160
	연령	-.059	.045	-.065	-1.306	.193	.782 1.279
	학력	-.025	.061	-.020	-.407	.684	.812 1.232
	행정시	-.089	.060	-.072	-1.480	.140	.835 1.198
	읍면동	.032	.062	.023	.513	.609	.947 1.056
	참여동기	-.005	.057	-.004	-.083	.934	.943 1.061
	활동기간	.038	.025	.069	1.514	.131	.947 1.056
	공무원 관심도	-.022	.059	-.021	-.372	.711	.598 1.672
참여 활동	참여도	.114	.090	.095	1.260	.209	.347 2.883
	수평적 신뢰관계	.233	.098	.196	2.386*	.018	.289 3.460
네트워크	정보공유	.143	.091	.135	1.560	.120	.261 3.829
	자원	.228	.060	.236	3.798***	.000	.508 1.969
운영체계	구조 및 협력	.253	.093	.224	2.737**	.007	.292 3.425

R=0.755, R²=0.569, 수정된R²=0.544,

F=22.373, P=0.000, Durbin-Watson=2.010

더미변수 : 성별(남=0, 여=1), 행정시(제주시=0, 서귀포시=1), 읍면동(읍면=0, 동=1), 참여 동기(비자발적=0, 자발적=1)

*.p<.05, **.p<.01, ***.p<.001

V. 결론

1. 연구결과

본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문제는 “제주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에 대한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밝히는 것이며 이 연구를 통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참여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46명중 243명을 조사한 설문지에 대하여 SPSS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52.3%, 서귀포시는 47.7%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읍면동으로 구분해보면 읍면 지역은 30.9%, 동지역은 69.1%로 동지역에 활동하는 협의체 위원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61.3%로 남성 38.7% 보다 많게 조사 되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51.2%로 전체의 절반을 넘게 위축되었고, 60대 27.7%, 40대 19.0%, 30대 이하2.1%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43.4%로 가장 많았고,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 재학이상, 중졸이하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원의 자격을 보면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는 22.6%이며,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3%,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이장.통장은 각각 3.8%이며,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은 30.1%, 그 밖의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 36.4%로 열의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이 가장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위원들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한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27.8%, 1년 이상 2년 미만 23.2%, 2년 이상 3년 미만 26.1%, 3년 이상이 22.8%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는 본인 자발적 참여가 43.3%로 절반에 가깝고, 동장의 추천을 통해 11.7%, 봉사단체 추천 20.4%, 리.통장모임 추천 5.8%, 지역주민 추천 18.8%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 1년 동안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교육주기는 6개월에 한번 실시했다는 48.2%로,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다, 3개월에 한번, 매달 실시했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에서 지난 1년 동안 협의체 회의개최 횟수를 조사한 결과 9회 이상이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개최가 잘 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를 개최하면, 조사대상자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회의 참석 횟수를 조사한 결과 7회 이상이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1년 동안 대다수의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에 적극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활동 요인에 대한 수준은 5점 척도 기준으로 4.16이며, 공무원 관심도가 참여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요인 수준은 4.16이며 수평적 신뢰관계가 정보공유 보다 높으며, 운영체계 요인은 3.88수준으로, 구조 및 협력이 자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3.99이며, 성취만족도가 기능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참여활동 요인이 협의체에 대한 공무원 관심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협의체 위원 참여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정보공유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운영체계의 자원요인에 관한 차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구조 및 협력관계 요인도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협의체 위원 역할 만족도 수준의 성취만족도 요인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기능만족도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 간 집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 및

참여도,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정보공유, 운영체제 자원요인과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 수준과 기능 만족도 등 조사항목 모두 서귀포시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활동 요인의 공무원 관심도와 참여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운영체제 요인의 자원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네트워크 요인의 정보공유나 운영체제 요인의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와 기능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 및 참여도,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정보공유, 운영체제의 자원요인과 구조 및 협력 관계와 기능 만족도는 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성취만족도 수준은 동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나 변인별 조사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읍면동의 협의체 위원 구성 요인 비슷하여 정서적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 및 참여도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정보공유 운영체제의 자원요인과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 수준과 기능만족도 등 조사항목 전부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인 경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협의체 위원들의 참여 동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 및 참여도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정보공유, 운영체제의 자원요인과 구조 및 협력요인 성취만족도 수준과 기능만족도 수준 등 조사항목 모두의 평균값이 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수평적 신뢰관계, 운영체제의 자원요인, 위원 성취만족도 수준은 유의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참여활동 요인 및 네트워크의 정보공유, 운영체제요인의 구조 및 협력, 기능만족도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협의체 위원들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 참여도와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정보공유, 운영체제의 자원요인, 구조 및 협력관계, 성취만족도 수준, 기능만족도 수준 등 모든 항목이 40대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네트워크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정보공유, 운영체제

자원, 기능만족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활동 요인에 따른 공무원 관심도는 2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높으며, 1년 미만과 3년 이상은 비슷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이 가장 낮게 조사 되었으며. 참여도는 1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는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공유는 1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순으로 조사 되었다. 운영체계의 자원요인은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3년 이상 순서 이며, 구조 및 협력요인은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성취만족도는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1년 미만, 1년 미만 순이며, 기능만족도는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 순으로 조사됐다. 활동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관심도는 참여도, 수평적 신뢰관계, 정보공유, 자원,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 기능만족도, 행정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도는 수평적 신뢰관계, 정보공유, 자원,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 기능만족도, 행정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수평적 신뢰관계는 정보공유, 자원,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 기능만족도, 학력, 행정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유는 자원,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 기능만족도, 학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원은 구조 및 협력, 성취만족도, 기능만족도, 행정시, 참여 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고, 구조 및 협력은 성취만족도, 기능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협의위원들의 협의체 활동과정에서의 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능중심, 참여 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나 연령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고, 기능만족도는 연령에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연령은 학력과 행정시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읍면동과 활동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성취도에 따른 역할 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의 참여 동기,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운영체계 요인의 구조 및 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의 성별, 연령, 학력, 행정시, 읍면동, 활동기간, 참여활동의 공무원 관심도, 참여도, 네트워크요인의 정보공유,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의 참여 동기는 자발적 참여일수록 성취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성취도가 높아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으며, 운영체계 요인의 구조 및 협력도 긍정적일수록 성취만족도가 높아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으며, 구조 및 협력이 가장 높으며, 수평적 신뢰관계, 참여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기능만족도에 따른 역할 만족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와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 구조 및 협력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의 성별, 연령, 학력, 행정시, 읍면동, 참여 동기, 활동기간, 참여활동의 공무원 관심도, 참여도, 네트워크요인의 정보공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기능만족도가 높아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으며,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과 구조 및 협력도 긍정적일수록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영체계 요인의 자원이 가장 높으며, 구조 및 협력, 네트워크 요인의 수평적 신뢰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는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소속된 행정시와 공무원이 관심도, 위원들의 참여도 높거나, 운영체계 자원 요인의 높을 때 역할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제주지역 읍면동간에는 정서적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 동기도 자발적인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발적 참여가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으며, 공무원들의 관심도와 위원 간 수평적 신뢰관

계가 높고, 정보공유가 잘될 때 역할 만족도가 높았다. 활동기간은 1년 미만부터 3년 이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에 따른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수록 성취만족도가 높아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신뢰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고, 운영체계의 구조 및 협력이 긍정적일 때도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체계의 자원이 높을수록 기능만족도에 따른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활동과정에서 미치는 역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읍면동 지역내 사회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자원이 위원회에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차원의 복지전달체계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 및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내실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시별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에 행정적인 역량을 배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확충과 읍면동에 전담조직의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역할인식 인지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사회복지기관, 읍면동 자생조직 등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본래 목적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됨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명확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들 스스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과 읍면동별 세부운영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읍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의 역할은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협의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지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협의체 위원구성 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협의체 위원 구성시 사회보장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실천하는 실무자 등 사회복지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 내 의료 자원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촉할 때는 엄격한 전문성 적격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에서는 정기적으로 사회보장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성 강화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함을 물론 시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포럼 등 개최하여 읍면동간 격차를 해소하고 읍면동별 장점을 널리 알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 내 네트워크에 대한 공무원 관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주도하에 민관의 협력적 관계를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영역간의 수평적 관계 설정을 통해서 협력과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 내 사례관리, 자원의 발굴 등 민간의 역할이 되는 정체성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그러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해결해 나가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시장.읍면동장 등 기관장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일선 최하위 조직인 읍면동에서는 관 주도하에 사회보장업무가 추진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아직도 중앙정부의 지침과 상급기관인 도와 시군구의 지시를 따라 집행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회복지 공무원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공

무원들의 자살 등 문제가 발생되면 정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사기양양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민간영역의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려면 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전담인력 확충과 승진 기회 제공 등 사기진작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내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망라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주지역 행정시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활동과정에서의 역할 만족도에 따라 민간영역의 주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범수. (2010). 「지역사회복지론」. 경기: 학현사.
- 류기형·배의식·손지현.(2015).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 경기: 정민사.
- 류종훈. (2014). 「지역사회복지론」. 경기: 정민사.
- 심상용. (2017).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학지사.
- 양정하 외 공저. (2008) 「지역사회복지론」. 제2판. 경기도: 공동체.
- 지은구·조성숙. (2010). 「지역사회복지론(지은구 외, 2010)」. 서울: 학지사.
- 진관훈. (2013). 「사회적 자본과 복지거버넌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출판.
- 홍현미라·김가을·민소영·이은정·심선경·이민영·윤민하. (2010).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 학위논문

- 곽희신. (2009).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 부천시와 성남시 사례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 (2015). 「지역복지협의체의 복지거버넌스 운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 (20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과정에 관한연구」.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예. (20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 활성화방안 연구 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기용. (201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포항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하. (2017).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복지인식이 복지허브화에 미치는 영향」. 한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현. (20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에 관한 연구」. 로컬거버넌스 개념 측정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경숙. (2015).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본 부산의 마을 만들기 사례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윤춘모. (200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요인이 통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복. (2010).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정립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준. (2016).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희. (2006).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민호. (20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협의체 위원의 인식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찬욱. (20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민간과 사회복지사간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3. 학술지 및 기타 자료

- 강혜규. (2017).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 정책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보건복지포럼. 제253권. pp. 7-20.
- 김기현. (201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김보영. (2013).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에 대한 이론적 탐색」. 사회복지정책. 제40호, pp. 35-63.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제38호(6), pp. 63-95.
- 김이배. (2014).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한계」. 비판사회정책. 제42호, pp. 44-91.
- _____.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비판사회정책. 제53호, pp. 326-376.

- 김 현.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민관협력교육 체계화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292-313.
- 남진열.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 학술대회. pp. 716.
- _____. (2004). 「제주의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역량강화전략 모색」. 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 135-169.
- 남진열·고관우·김상미·한혜숙. (2017). 「제주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 남진열, 전영록. (2012).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3호, pp 513-530.
- 류기형. (2000). 「지역사회복지의 상황적 변화에 따른 발전전략과 과업」.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8호, 67-86.
- 류기형·류영미·박병현. (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1권 제3호, pp. 1-30.
- 박선희·김수영.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2호, pp. 153-179.
- 박태영. (2017). 「읍면동, 지역복지 현장으로 적합한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pp. 3-27.
- 손지현·정신모. (2017).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자원개발관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9권 제4호. pp 201-223.
- 안혜영. (2013). 「지역복지 추진체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pp. 41-41.
- 오민수. (201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 읍면동 중심의 민관협력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24권. pp. 35-78.
- 유용식·조성희. (2016).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현황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p. 171-208
- 오운정. (2016).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제57호. pp. 15-24.

- 유현종. (2016).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변화와 지속성」.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36-159.
- 이 강. (20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의 통합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2호, pp. 31-53.
- 이석환. (2017).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 제4호 pp. 93-122.
- 이운형. (2018). 「울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방안」. 울산발전연구원. 이슈 리포트, Vol. 146.
- 이재완·김승용.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0호, pp. 131-157.
- 정지용·이현아·백소영. (2015). 「지역복지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5권 pp. 128.
- 차홍봉. (2013). 「지역사회의 민관복지 거버넌스 활동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p. 83-83.
- 채현탁. (2015).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2집, pp. 117-145.
- _____. (2014).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0호, pp. 177-201.
- _____.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8집. pp. 141-171.
- 채현탁·박종철. (2017). 「지방정부 사회복지 분권화의 관제 방향에 관한연구 : 지역사회 복지주체의 활동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2집. pp. 89-119.
- 최재성·강은나·이정은·조미형·김영환. (2014). 「지역중심 사회복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2), pp. 155-180.
- 최향순·윤춘모. (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서비스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pp. 367-386.
- 한동우. (2013). 「지역기반의 복지공급체계 :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네트워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40호. pp. 285-311.

- _____. (2017).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53권, pp. 2-5.
- 함철호. (2015).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4집, pp. 213-243.
- _____. (2017).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질적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0집. pp. 59-97.
- 허철행. (2018).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지방분권 거버넌스 복지국가」. 사회과학연구. 제34호, pp. 1-33.
- 홍선미. (2016). 「읍면동 단위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제21집, pp. 153-179.
- 홍인정. (201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164호. pp 57-69.
- 보건복지부.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
- 제주특별자치도청. 201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현황」.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내부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익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제주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자의 석사 논문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작성 되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모두 무기명 처리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은 참여하는 것은 자의이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간 중 원하실 경우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으며, 그로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일

연구자 : 김익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 남진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연락처 : 김익수 (010-3698-0228)

I.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를 하거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자격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①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②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이장, 통장
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⑥ 그 밖의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

5. 귀하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는?
① 본인 자발적 참여 ② 동장의 추천을 통해 ③ 봉사단체 추천
④ 리·통장 모임 추천 ⑤ 지역주민 추천

7. 귀하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느 읍면동에 소속입니까?
_____ 읍면동

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나 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읍면동장은 협의체 구성에 여러 분야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읍면동장은 협의체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 활동에 전문가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주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체는 교육 및 세미나가 활성화 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협의체 회의는 자주 열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세미나 등에 잘 참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협의체 위원의 활동이 복지서비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위원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 보다 모든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활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1.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지난 1년 동안 어느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실시한 적 없다 ② 6개월에 한번 ③ 3개월에 한번 ④ 매달 한번

6-1. 지난 1년 동안 협의체 회의는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 ① 1 ~ 2회 ② 3 ~ 4회 ③ 5 ~ 6회 ④ 7 ~ 8회 ⑤ 9회 이상

7-1.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는 협의체 회의에 몇 번 정도 참석하였습니까?

- ① 1 ~ 2회 ② 3 ~ 4회 ③ 5 ~ 6회 ④ 7회 이상

Ⅲ.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 참여자간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의체 위원 간 상호관계는 수평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의 현안 해결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체 위원 간 신뢰관계는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협의체는 지역복지 자원을 공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협의체에서는 민·관의 정보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IV.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나 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 운영 재정의 규모는 충분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구성된 협의체 위원 숫자(규모)는 충분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협의체를 운영 관리하는 인력은 충분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협의체 구성원 간 책임소재는 명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협의체는 참여 구성원 간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협의체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협의체는 지역복지 갈등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협의체 참여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1. 위 표의 (7번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하신 분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전문성 부족하다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개만 선택하여 체크해 주세요)

- ①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 ② 전문성 있는 의료인, 교사 등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 ③ 전문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 수당 등 적절한 비용지원이 필요하다
- ④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을 상대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⑤ 엄격한 전문성 적격 심사를 거쳐 위원을 선발한다

V.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협의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소속한 기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협의체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자원 발굴 기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협의체 운영으로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자원) 발굴 기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협의체 활동은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기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협의체 활동이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 기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민·관 협력 활성화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개선할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들의 비율이 늘어나야한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⑤ 사회보장 대상자들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
 - ⑥ 월례회 전 복지대상자 등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
 - ⑦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직렬이 되어야한다

<ABSTRACT>

Factors Affecting Role Satisfac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Members in Jeju Eup-Myeon-Dong

Kim, Ik-Soo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by exploring the effect of participating activities, network factors, and operating system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the council members.

For the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ed 243 out of 846 members of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 in Jeju area using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ole Satisfaction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is not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members, but 2) role satisfaction of the members is high when there is a high degree of interest of administrative city and civil servants. In other words, as the members of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are able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the degree of satisfaction is high because of their high achievement. Also, the more horizont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ttee members was, the higher the role satisfaction of council members 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ole Satisfaction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is not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members, but 2) role satisfaction of the members is high when there is a high degree of interest of administrative city and civil servants. In other words, as the members of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are able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the degree of satisfaction is high because of their high achievement. Also, the more horizont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ttee members was, the higher the role satisfaction of council members is.

Based on there search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satisfaction of council members, various resourc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in the community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council members, so that they can fulfill their roles efficiently. This will help the community be able to resolve issues around welfare blind spots and to build stronger soci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is aimed 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in Jeju, so it is difficult to draw out implications for all the social security councils in the whole country. As there are differences in administrative time in Jeju,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of the analysis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nd their efficient operation in the future, a more diverse follow-up study will be required.